



송파구의회
Songpa District Council

미래도시 선진성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심사보고서

의안명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427호
심사일자	2026. 05. 08. (금)



위원장 이강무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27호
------	-------

2026년 05월 08일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04. 27. 최상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6. 04. 28.
- 다. 상정일자 : 2026. 05. 08. 제33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최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불법주정차 금지 대상임.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제3호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운전자 특정 시에는 경찰의 범칙금 처분,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를 두고 있음.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반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단속 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해석상 집행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함.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 이송처 :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손지훈 전문위원)

- 본 안전은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에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 지난 10여 년간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결과가 실제 범칙금 부과로 직결되지 못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권한 분리는 행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단속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목적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비단 송파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회 문제임. 따라서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법령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안 및 단속 가이드 라인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이강무 위원 】

- 답변 :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 이륜자동차의 장기 방치 시 단속 방법은? 단속 전담 인원이 있는지?
 - 실제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하며, 전담 단속 인원은 없음. 도로상 이륜자동차 방치 시 120 응답소, 주민 불편 신고 또는 순찰 시 장기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처리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장기 방치 시 번호판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 범칙금 부과 가능하지 않은가?
 - 장기 방치 신고 접수 후 소유자(대상자)를 찾아 사전 공문 절차를 통해 안내 하고 그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 방치 시 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